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순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 : 변O타(보호자 이O실)(전라남도 순천시 신흥중1길 **, *층)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등록 재판정 불이행
6.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3, 제8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7. 청문일정

청문실시	기관명	순천시청	부서명	가족복지과	담당자	김대의
	주소	순천시 장명로 30(순천시청)			전화번호	061-749-3166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16:00			장소	순천시 CBS 소회의실(중앙로66, 8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순천시 예산과 법무팀장			
		성명	하석현			

8.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순천시청 가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담당자(☎061-749-3166, FAX 061-749-4167)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